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27 제출연월일: 2024. 12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전단 중 "개시(開始)·휴업"을 "개시(開始)하거나 30일 이상 휴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"휴업한 후"를 "30일 이상 휴업한 후"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영업 개시 등의 신고) 위	제25조(영업 개시 등의 신고)
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<u>개시</u>	<u>개시</u>
(開始)·휴업 또는 폐지(廢止)	(開始)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-
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	
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	
하여야 한다. <u>휴업한 후</u> 업무를	<u>30일 이상 휴업한 후</u>
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	